



군포대아미지구 A-1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군포대아미 공공주택지구내 A-1블록

■ 공급대상 :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378세대 [전용면적 55㎡ 52세대, 59㎡ 326세대]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 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3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07**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055.0000A, 059.0000A, 059.0000B, 059.0000C)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택형(타입)이라도 구조설계상 형태·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A1, A2 등 세부평형이 구분될 수 있으며, 동·호는 신청한 주택형(타입)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경우 선호순위 신청 후 배정된 주택형(타입) 내에서 무작위 배정)**
- **군포대아미지구 A-1블록은 실물 견본주택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세대정보는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gd-a1.co.kr)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장상담을 위해 **2026.07.11.(토) ~ 07.12.(일)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기간동안 LH수원주택전시관을 운영**합니다.
 ※ LH수원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031-297-5229)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 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군포시 1년 이상(2025.06.30.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군포시 1년 미만(2025.07.01.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6~7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25.06.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5.06.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총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1순위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1순위자] 해당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소득	해당 없음	(본인) 월평균소득 140% 이하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총자산	해당 없음	(본인) 276,000천원 이하 (부모) 1,035,000천원 이하	해당 없음	(세대) 362,000천원 이하				(세대) 362,000천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사전청약 당시 청년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자세한 신청자격 검증대상은 13페이지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각 유형별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원수별로 추가 완화 기준 상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참고)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7페이지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중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 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분양전환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5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5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 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 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감정가와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으로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참고)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 약	
	사전청약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전자	현장
	접 수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 포기						
6.30 (화)	7.13(월) 10:00 ~ 7.14(화) 17:00	7.15(수) (14:00)	7.16(목) 10:00 ~ 7.20(월) 17:00	7.22(수) 10:00 ~7.23(목) 17:00	7.24(금) (10:00~17:00)	8.7(금) (14:00)	8.14(금) ~ 8.17(월) (10:00~16:00)	11.12(목)~11.13(금) (10:00~16:00)	11.16(월)~11.17(화)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방문접수 (LH 수원 주택전시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수원주택 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031-297-5229)
-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참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LH 수원주택전시관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원(6인)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선호 주택형(타입)이 아닐 경우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포기(인증서 필요)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본청약 신청접수 및 청약통장 사용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6.11.12.(목) ~2026.11.13.(금)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수원주택전시관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6.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6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최초 입주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LH)가 선정하고, 향후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분양전환 되어 관리기관 되는 경우, 관리기관 이후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협의하여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 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검증함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 소유여부 및 소득·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개요
개요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 ①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분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을 입주시감정가로 함 * 입주시감정가는 적절한 초기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유의사항	-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은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군포대야미지구 A-1블록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2~27층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378세대 (사전청약 229세대, 일반공급 7세대, 특별공급 141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세부 평형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계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가정 어린 이집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청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 유공자	기타 특별													
합 계																	378	229	23	15	15	15	8	44	7	14	7	1			13	
A-1	055.0000A	55A	55.9400	21.9180	9.9048	54.0057	141.7685	30.9200	49.7525	52	30	4	2	2	1	7	1	2	1	-	15	3	'29.12									
		59A1	59.9700	23.4970	10.6184	57.8963	151.9817	32.1700	53.3368	185	113	11	7	7	7	4	21	3	7	4	1	15		2								
	059.0000A	59A2	59.9900	23.5049	10.6220	57.9156	152.0325	32.2600	53.3547													22		3								
		59A3	59.9900	23.5049	10.6220	57.9156	152.0325	32.2600	53.3547													27		-								
	059.0000B	59B1	59.8400	23.4461	10.5954	57.7708	151.6523	30.3400	53.2212													70		43	4	3	3	3	2	8	1	2
		59B2	59.9900	23.5049	10.6220	57.9156	152.0325	30.1900	53.3547	27	-																					
059.0000C	59C1	59.9600	23.4931	10.6166	57.8867	151.9564	33.4300	53.3279	71	43	4	3	3	3	1	8	2	3	1	-	22	2										
	59C2	59.9600	23.4931	10.6166	57.8867	151.9564	32.7500	53.3279												27	1											

- ※ [중요]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가 확장된 전체 실거주 면적 등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세부평형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층 세대수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최대 배정 가능 수입입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 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본 단지는 개별 냉난방(단, 급탕은 중앙집중)방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단, 지하주차장은 무량판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주택형(타입)별 평면구조는 분양 안내 책자(팸플릿 등), 단위세대별 마감재 및 가구배치는 사이버주택 전시관(V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제로에너지 3등급 예비인증 받은 공동주택으로 목표에너지 자립을 달성을 위한 설비(지열에너지 시스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들이 설치될 예정이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대상입니다. 또한 소용량의 VIB ESS(물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시스템) 총 4대가 103동 지하 1층 EPS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인 입주 후 12개월 운영 뒤 철거 및 마감 복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3구역(전술)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이며, 단지 서측의 송전선로는 존치 예정이고 입주인 입주 후 일부세대는 주변 산지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12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단, 임대의무기간(6년) 만료 후 분양 미선택 시 최대 4년[2년+2년(갱신요구시)]까지 추가 거주 가능(6년 만기 분양전환 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는 임차인은 퇴거대상이므로 추가 거주 불가)
- ※ 해당 주택은 추가 거주 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을 포기한 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및 입주시 감정가

[단위 : 원]

블록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입주시 감정가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	055.0000A	55A	85,614,000	17,100,000	68,514,000	647,610	379,230,000
		59A1	96,292,000	19,200,000	77,092,000	703,860	406,550,000
	059.0000A	59A2	96,290,000	19,200,000	77,090,000	703,750	406,686,000
		59A3	96,242,000	19,200,000	77,042,000	703,410	406,686,000
	059.0000B	59B1	95,616,000	19,100,000	76,516,000	699,710	405,669,000
		59B2	95,896,000	19,100,000	76,796,000	700,970	406,686,000
	059.0000C	59C1	95,811,000	19,100,000	76,711,000	700,520	406,483,000
		59C2	95,789,000	19,100,000	76,689,000	700,360	406,483,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 상기 입주시 감정가는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이며,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은 향후 분양전환시점에 관련법령 등 분양전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	055.0000A	55A	85,000,000	354,170	170,614,000	293,440
		59A1	96,000,000	400,000	192,292,000	303,860
	059.0000A	59A2	96,000,000	400,000	192,290,000	303,750
		59A3	96,000,000	400,000	192,242,000	303,410
	059.0000B	59B1	95,000,000	395,830	190,616,000	303,880
		59B2	95,000,000	395,830	190,896,000	305,140
	059.0000C	59C1	95,000,000	395,830	190,811,000	304,690
		59C2	95,000,000	395,830	190,789,000	304,530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	055.0000A	55A	189,580	65,000,000	20,614,000	837,190
		59A1	215,830	74,000,000	22,292,000	919,690
	059.0000A	59A2	215,830	74,000,000	22,290,000	919,580
		59A3	215,830	74,000,000	22,242,000	919,240
	059.0000B	59B1	212,920	73,000,000	22,616,000	912,630
		59B2	212,920	73,000,000	22,896,000	913,890
	059.0000C	59C1	212,920	73,000,000	22,811,000	913,440
		59C2	212,920	73,000,000	22,789,000	913,280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세부평형	합계	택지비	건축비
A-1	055.0000A	55A	237,228,000	102,177,000	135,050,000
		59A1	258,584,000	109,538,000	149,045,000
		59A2	258,580,000	109,575,000	149,005,000
	059.0000A	59A3	258,484,000	109,575,000	148,908,000
		59B1	257,232,000	109,301,000	147,930,000
		59B2	257,792,000	109,575,000	148,217,000
	059.0000B	59C1	257,622,000	109,520,000	148,102,000
		59C2	257,578,000	109,520,000	148,057,000

- **상기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제2호가목에 따라 작성된 가격이며, 입주시 감정평가금액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66,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6년 이후 ※ 단, 당첨(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이후 신규출산(2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 포함)한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3년)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LH)와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전환 선택 기회 부여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① 입주시감정가와 ② 분양시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 (분양전환가격이 분양시감정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시감정가를 분양전환가격으로 함) ※ ① 입주시감정가 :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본청약 입주자모집)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다만,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하 “분양가상한제적용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적용가격 을 입주시감정가로 함 * 입주시감정가는 적정한 초기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7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일 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② 분양시감정가 :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당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4.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군포대야미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군포시)	100%	· 공고일 현재 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 거주 ('25.06.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주택건설지역(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30)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6.30부터 계속하여 군포시 거주.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공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08.07)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청년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은 청년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는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단, 입주자 선정을 위한 무주택 판단 시에 한함(입주일 이후에는 입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총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부동산 (건물+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③기타자산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 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유동성 한도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론 대출액을 소명할 경우 부채로 인정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총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총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총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97,000천원 이하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 311,000천원 이하, 부모 1,035,000천원 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431,000천원 이하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 345,000천원 이하, 부모 1,035,000천원 이하	<표2>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③ 기타자산			
④ 자동차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청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공급유형별(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표4-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인) (단위 : 원)

공급유형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 청년 특별공급의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

(표4-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인) (단위 : 원)

공급유형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2인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12,778
	우선공급 ^{1순위} 자(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799,405
	추첨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732,54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626,15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12,778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626,15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732,540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626,151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212,77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799,40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212,77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732,5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626,151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212,77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799,40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212,77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732,540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6,452,89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626,15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8,799,405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86,03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8,799,40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732,54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표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상)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 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252,644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	5,279,643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	6,452,897	8,985,272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4,957,372	7,626,151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8,212,778	11,435,801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	8,799,405	12,252,644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	9,386,032	13,069,486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6,482,717	9,972,659	13,886,329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8,008,062	12,319,167	17,153,701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8,389,399	12,905,794	17,970,544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	------------	------------	------------	------------	------------	------------	------------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1인(청년이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구성원이 있어도 본인만 적용)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	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
일반공급,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단순 연락두절 인정 불가)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	------------------------------------------------------------------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은 7페이지 내용 참고)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 사전청약 당시 청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검증함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6.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군포시 1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6.)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군포시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 사전청약 당시 청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6.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7.13.(월) 10:00 ~ 07.14.(화) 17:00 (야간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발표 확인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신청 필요(청약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신청서 작성시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을 기준으로 임의로 1개의 주택형(타입)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에서 주택형(타입) 선호 순위를 선택** 하며, **모든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빠짐없이 선호 순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중복선택 불가)
(예시) 사전청약 당시 59형에 당첨된 경우, 059.0000A, 059.0000B, 059.0000C를 임의로 1개 선택 후 다음 단계에서 선호 순위 입력
-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 순위 순으로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군포대야미	A-1	55	055.0000A	1순위
		59	059.0000A, 059.0000B, 059.0000C	1순위→2순위→3순위

- [중요]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을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청약 신청 포기기간 내 LH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을 사용처리 되지 않으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타입) 발표 일정 : 2026.07.15.(수)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당첨 결과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07.16.(목) 10:00 ~ 07.20.(월)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당첨 결과조회→포기 신청)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 아님)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당첨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타입)별 내에서 세 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시 당첨자발표일[2026.08.07.(금)]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선정 불가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6.08.14.~08.17.)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본에 한함)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시 제출서류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사전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기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지역(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경기도(장애인), 군포시(군포시 철거민),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7.22.(수)~07.23.(목))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추천받은 주택형(타입)과 동일한 주택형(타입)으로 청약접수하여야 하며, 추천받은 주택형(타입)과 상이한 주택형(타입)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타입)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2.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무주택자(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④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

[단위 : 원]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인** 자에게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나.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경기도)	2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가) 본인 월평균 소득 :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나.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경기도)	2년 이상	3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라. 소득세 납부기간	5년 이상	3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해당없음	0	

※ (가) 본인 월평균 소득 :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검증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7.01. ~ 2026.06.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어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에게 배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시·군·구가 속한 시·도(경기도) 거주자에게 50%(단,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에게 배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완화기준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고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

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완화기준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6.30.~2026.06.30.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수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완화기준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3세 또는 4세	2	
	5세 또는 6세	1	
	해당없음	0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7.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 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 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완화기준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군포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1명	1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3년 이상	3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해당없음	0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693,016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선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8.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7페이지 참조)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총자산보유기준(9페이지)”을 충족한 분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인 분
 - * 구체적 소득기준 금액은 공고문 10페이지 - 11페이지 참고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다만,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0%,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완화기준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8>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 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8>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8>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

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6페이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타입)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킷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 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합니다(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함).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신청방법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7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7.13.(월)~07.14.(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당첨된 주택형(타입)별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청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청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제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타입)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타입)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7.13.(월) 10:00 ~ 7.14.(화) 17:00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2026.07.22.(수) 10:00 ~07.23.(목) 17:00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인터넷 신청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07.24.(금) (10:00 ~ 17:00)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된 주택형(타입)을 확인 후, 본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약 최종 신청 포기 후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본청약 현장접수 후 본청약 신청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포기 필요(공휴일(7/17) 및 주말에는 방문하여 포기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주택형(타입)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유형(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VI.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관추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철거민, 철거민 등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행접수가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서면신청서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청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6.07.23(목) 오후 8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사전청약당첨자 기관추천 청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발표 확인 → 본 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 특별공급(기관추천, 청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청년/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 신청 → 6년 공공임대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신생아우선공급/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7.13.(월) 10:00~07.14.(화) 17:00, (특별공급) 2026.07.22.(수) 10:00~07.23.(목) 17:00, (일반공급) 2026.07.24.(금)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2026.07.16.(목) 10:00 ~ 07.20.(월)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군포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과거 1년 미만 군포시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한함]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LH 수원주택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의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의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LH 수원주택전시관(☎031-297-52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 경우 본인이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구비하여 현장에 방문하시면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가능, 신분증 지참)

■ 서면신청접수 방법

- 기관추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철거민, 철거민 등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대행접수가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서면신청서를 통한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및 방문(서면)신청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전자신분증 불가) ※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신청자 구비 ※ 대행접수 및 서면신청서는 현장 구비
		② 도장(서명가능)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⑤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6.08.07.(금)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08.14.(금) ~ 08.17.(월) (10:00~16:00) LH수원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26.11.12.(목) ~ 11.13.(금) (10:00~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26.11.16.(월) ~ 11.17.(화) (10:00~16:00) LH수원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서류제출은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이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청년·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08.14.(금)~2026.08.17.(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화))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에 정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제출

- LH 수원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방문하여 제출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 관계 등 전부 포함)	본인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⑥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 관계 등 전부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⑦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⑧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⑨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⑩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 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⑪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⑫ 아동수당 부모급여 수령 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⑬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⑭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⑮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6.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⑯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⑱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특별공급(기관추천, 청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본인	
	○		⑥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관계 등 전부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서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⑨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⑩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⑪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⑫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⑬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⑭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⑮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청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또는 모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혼인여부 확인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 <표9>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관계 등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관계 등 전부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함하여 발급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예비)배우자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과거내역 및 세대주관계 등 전부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자녀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③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⑧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⑨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표9>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3. 계약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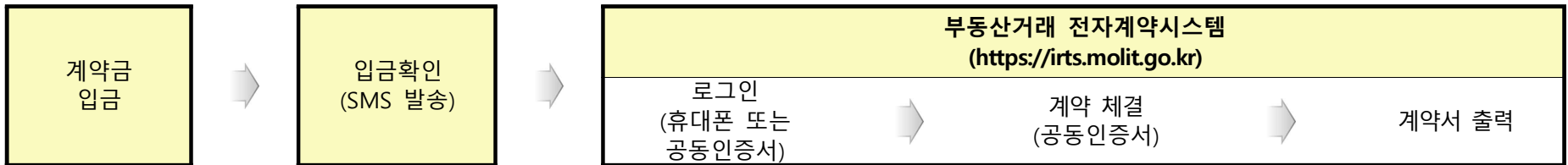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본인도장(인감도장 외 도장도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마감시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비디오폰 높이조정	
옥 실 1개 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 실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 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6.11.16.(월) ~2026.11.17.(화))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2025.01.31.)호로 승인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포대야미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공공(장기)임대, 민간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상복합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이후에도 주변 도로, 공원, 아파트 등 미개발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부지 내에서도 도로, 조정 등 단지 내외부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이후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에 죽암천(지방하천), 중앙에 대감천(소하천), 지구 서측에 안골천(소하천) 등 3개의 하천 및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2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지구 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수량이 적거나, 악취가 나거나 수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발생 오수는 '29년말~'30년초 가동 예정인 지구 외부 하수처리장(증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27년부터 입주 예정인 B-1, B-3블럭의 경우 기존 하수처리장(군포대야 물말골터)에서 처리예정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에 따라 지구 내 일부구역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은 하수처리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3개의 고압 송전선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중앙부(345kV) 및 동측(154kV) 의 일부 송전선로는 지중화(지구내 케이블헤드(C/H) 설치) 예정이며, 지구 서쪽 송전선로(345kV)는 존치 예정입니다.
- 지구 남측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23.6월 지정) 추진의 영향으로 본 지구 지구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천, 공원·녹지, 학교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군포시청으로부터 반경 약 5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북측에 갈치저수지, 소규모 집단취락지, 수리산도립공원, 동측에 남북방향으로 지하철 4호선(대야미역), 남측에 동서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 지구 서남측에 반월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및 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주변 군포IC(영동고속도로), 남군포IC[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3구역(전술)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청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 여건 등에 따라 아파트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내외부 레벨 차는 기반시설 공사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구 내 도로(중로 2-1)가 동서측 방향으로 주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내 일부세대는 주변 산지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 결정 및 운영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결정 및 운영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교통시설(신호등,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버스정류장 위치 등은 지구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휨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 이후에도 당 블록 인근 부지(지원시설용지 등)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해 부지 인접 기착공 및 미착공 현장으로 인해 건설장비가 통행 및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에 주변 공원개장, 도로개설 등 택지기반시설이 미설치· 및 미완성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안골마을 및 농경지가 있어, 악취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개발여건 등에 따라 소음·먼지·악취·진동·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폭 등은 최종 측량결과 및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이나 환경권(소음·일조·조망 등)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인근 단지의 공공보행통로 이용을 위해 보행자 출입구를 상시 개방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인근에는 한전 지중화용 지상기기, 가로등·소화전·CCTV 등 노상시설물 및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전력·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상 노출 시설물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최적 위치에 설치(또는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제로에너지 3등급 예비인증 받은 공동주택으로 목표에너지 자립을 달성을 위한 설비들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7m로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외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높이 2.3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구분	주차대수				
		확장형	일반형	장애인	경차	전기차
456대 (근린생활시설 2대 포함)	계	298대	78대	14대	34대	32대
	지상	-	2대	-	-	-
	지하1층	118대	33대	14대	11대	32대
	지하2층	180대	43대	-	23대	-

- * 주차대수 산정 : (아파트) 세대당 1.2대, (근린생활시설) 125㎡당1대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주차장 진입층(지하1층)에 배치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32대 중 6대는 급속충전기, 26대는 완속충전기(1채널 4기, 2채널 11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단지는 지상층 차량 통행이 없는 단지로 계획되었으나, 비상시 또는 단지 운영에 따라 관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보차혼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케이블 등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 시 각 동의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따라 본 아파트 설치예정 주차대수는 총 456대(상가2대 포함)로 동별, 층별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분 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 경로당, 근로자휴게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스터디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103동 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104동과 105동 사이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위치 및 차로의 너비 등은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사항이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코아별 1층 출입 형태는 해당 동의 여건상 로비형, 필로티형이 다르게 계획(102동 3~5호/ 103동/ 104동 3~5호/ 105동은 필로티형, 104동 1,2호/ 102동 1,2호/ 101동은 로비형) 되었으며,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높이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조명 또는 보안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단지의 거실 및 침실 창호가 하부 FIX창(고정)과 유리 난간대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짐의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비상차로 구간에 소방차 전용구획 사인이 적용되며 시공 시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홍보물에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입주자 모집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에서 무리한 변경요구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에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사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피트니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비실 등이며 각 시설별 시설물(가전제품, 이동식가구 등)은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5개소(아파트 4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이며, 재활용 보관소는 1개소(지하1층 주차장)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비주거 시설을 위한 생활자원보관소도 같이 배치되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자원보관소의 배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계약 전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생활자원보관소는 지상1층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된 동에는 필로티 내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라인에 지상 1층 필로티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기타 자전거 보관대는 외부에 설치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펜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파고라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으로 소방을 위한 공기 안전매트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블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웬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타 공용구간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 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정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각동 지하1층에 위치하며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세대별 단독이용이 불가하며 운·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뽀뽀칠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석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생활자원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부 레벨차로 내외부의 보행, 비상차로 연결동선 일부는 경사로 및 계단으로 연결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통로는 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인근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송수구 및 상수도·소화전 위치가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차량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고,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공고문에 명기된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1, 102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기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ELEV.홀 내부의 EPS/TPS,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피난용 E/V 도어나 계단실 도어와 인접해 있어 통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 현황 계약전 확인 바람에 해당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콘센트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및 IOT콘센트로 설치 및 제어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용 어플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축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공동주택용)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본 단지 내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소동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3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상부 헬륨실 주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위치는 지하층 승강기 전실,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각 동 출입구, 수경시설, 키즈스테이션, 생활자원보관소, 주동 1층 계단실, 최상층 계단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침실 내 도어 후면, 현관창고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 세대는 방범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기계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일부 동에 배치되어 팬 가동시 소음, 진동, 냄새, 열풍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에 설치한 냉난방용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4동 지하층 주변에는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저수조/펌프실 등이 배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팬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가동 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위세대, 부대시설 등에 설치되는 에어컨 및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내 지하층 계절창고 환기팬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제습기 등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기계 배관과 관련하여 세대 내, 외부, 피트층, 지하주차장 등에 PD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연결송수구 및 옥외 상수도소화전이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되며, 일부 커튼월 설치구간에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옥상에는 통기관이 노출 시공되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ZEB(제로에너지빌딩) 3등급

- 군포대야미에 설치되는 VIB ESS는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총 4대가 103동 지하 1층 EPS실에 설치될 예정으로 EPS실 공간이 다소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인 입주 후 12개월 운영 뒤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마감 복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설치 및 철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자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ESS 운영 중 ESS 공조장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VIB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이므로 화재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 내외부 마감방법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거실·침실1은 시스템창호, 침실2·3은 일반창호로 설계되었으나, 추후 침실2·3의 창호종류가 변경(일반창호→시스템창호)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창호는 일반 창호 대비 우수한 기밀·수밀·단열 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로 창짝의 밀착성이 높아 특성상 사용 시 개폐력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창호 자체에 블라인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VR에 적용된 창호, 블라인드 및 기타 마감재의 규격, 형태, 색상 및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의 최대 제작 가능 폭은 1.2m로, 이를 초과하는 폭의 창호에는 블라인드가 분할되어 적용됩니다.
- 시스템창호의 손잡이 및 하드웨어는 제품별 지정된 방향과 방법에 따라 조작하여야 하며, 과도한 힘이나 임의 조작 시 고장 또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창호 개폐 시 창짝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조작하여야 하며, 창짝이 열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손잡이를 작동할 경우 하드웨어 파손, 창짝 처짐 및 작동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 3등급 만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동 옥상부, 측면, 정면, 커뮤니티 옥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용량에 따라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정면 및 커뮤니티시설 옥상부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면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를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설치 구간 확인 시 마감재가 벽체와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됩니다. 이는 패널 후면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통풍용 이격 공간으로서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이며, 강풍 시 해당 공간을 통해 풍절음(바람 소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패널 표면에는 전기를 모으는 미세한 금속 선이 격자무늬(셀 패턴)로 보일 수 있으며, 시간대나 기상조건(일조량), 관측하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동일한 색상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빛의 반사와 굴절에 따른 광학적 현상으로 도장 불량이나 이색(색상 차이), 스크래치 등의 하자가 아니므로 교체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빛반사, 진동, 소음(풍절음 포함), 열기, 전자파 등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개별 세대가 아닌 공용부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특성상 시간대, 일조량, 기상 조건(날씨 등) 및 계절에 따라 실제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발전량 저하 등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옥상부, 측면, 정면, 커뮤니티 옥상부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외곽으로 지중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단위세대 관련

▶ 건축 / 일반사항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는 확장형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을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거실, 침실, 주방/식당 공간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로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주방가구(상부장,하부장 등),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가구류의 형태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습니다.(문 개폐시 욕실화와 욕실 도어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지 배치도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개폐방향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건조대 등 사용 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TV, 전동빨래건조대는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추가 설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내 도어 후면, 신발장, 드레스룸 등 벽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 등 인조대리석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몰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도어면 외부로 돌출될 수 있으며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피난구)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발코니는 현재 전세대 확장형으로 공사할 예정이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벽지류, 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패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 세도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마감 코킹(실리콘)은 본공사시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양홍보물에 설치된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방향, 손잡이,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59형은 주동의 최고층수에 따라 구조벽체 두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실외기실 도어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일부 타입 단위세대 내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설치시 병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직렬 설치시 창호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 전 다용도실 공간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 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기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기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침실 내 도어 후면, 신발장, 드레스룸 등 벽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으로 인해 홈네트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기계

- 세대 냉난방은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이 적용되며, 세대별 요구 조건에 따라 성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를 위하여 제1종 환기방식(기계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 배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되고 환기유니트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환기유니트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유니트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유니트용 컨트롤러는 안방과 거실에 각각 설치됩니다.
-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하부에 환기 컨트롤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품의 사양(제조사, 형태, 규격, 하드웨어 등)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배관류의 소음차단, 진동완화 등을 위해 PVC 저소음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다용도실에는 세탁용 수도꼭지, 가스계량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온수분배기는 세대 주방가구 하부장에 설치됩니다.
- 레인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냉·난방을 위하여 설치된 지열히트펌프와 열교환유닛 장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배치 및 개구부 개폐에 따라 저주파 진동음을 비롯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각 실별(침실/거실) 천장에는 시스템에어컨 냉방전용 실내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품의 사양(제조사, 형태, 규격, 하드웨어 등)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주자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탠드형, 벽걸이형 등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드레인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환기유닛, 하향식피난구, 지열히트펌프, 열교환유닛, 에어컨 배관 등이 설치되는 관계로 장소가 협소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품의 사양(제조사, 형태, 규격, 하드웨어 등)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서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마감자재는 제품 단종 및 제조사 이슈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설치 및 시공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개교 시기

- ※ 지구 내 계획되어 있는 학교시설(초, 중)은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령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및 설계계획 보류,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을 따릅니다.
- ※ 본 주택 입주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는 2029년 9월 개교 예정인 대야미지구 내 초등학교(둔대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학교 개교 전까지는 기존 둔대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 ※ 중학생은 군포시중학군 내, 고등학생은 안양권(군포,의왕,안양,과천시) 내 배치될 예정입니다.
 - 단, 신설학교의 개교 시기, 통학구역 및 학생배치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개발 진행 상황, 학생배치 여건 변화, 사업 추진 현황, 세대수 변경 및 사업 장기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최종 학생 배치계획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배정 및 개교 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역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유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내에는 기본품목, 유무상업선 및 각종 연출용 시공부분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 시공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연출용 시공 부분(분양가 미포함)은 실제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은 사업계획 변경승인(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2023년 12월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등하였으며, 일부 사항은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인 동·호수지정시 동일평형이나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임대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한 임의시공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하자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요청이 있을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설치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은 실내구조(폭, 높이, 깊이 등) 및 형태에 따라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재료 및 자원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물순환 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생태환경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실내환경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등급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유지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주택성능분야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법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주차공간 추가 확보	★★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피난안전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 분		타입별 적용 여부		
		55A	59A,B,C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포세린타일	포세린타일	
	마루귀틀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신발장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현관팬트리	바닥	포세린타일	포세린타일
벽 / 천장		실크벽지	실크벽지	
거실/주방	벽 / 천장	실크벽지	실크벽지	
	아트월	포세린타일	포세린타일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주방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주방가구	문짝	데코시트(PET)	데코시트(PET)
		상판	인조대리석(MMA)	인조대리석(MMA)
침실1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 / 천장	실크벽지	실크벽지	
침실2,3	문틀/문짝	데코시트(PP)	데코시트(PP)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 / 천장	실크벽지	실크벽지	
욕실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ABS판넬	ABS판넬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	침니형	
	가스레인지	3구형 가스쿡탑	3구형 가스쿡탑	
	싱크용접수기	설치(퓏센서식)	설치(퓏센서식)	
욕실설비	욕조(욕실1_공용욕실)	펠아크릴	펠아크릴	
	욕조수전(욕실1_공용욕실)	선반형 욕조수전(안마헤드)	선반형 욕조수전(안마헤드)	
	샤워수전(욕실2_부부욕실)	레인형(수납일체형)	레인형(수납일체형)	
	양변기(욕실1_공용욕실)	원피스형	원피스형	
	양변기(욕실2_부부욕실)	원피스형	원피스형	
	비데(욕실1, 욕실2)	설치	설치	
	욕실수납장(욕실1_공용욕실)	2도어 슬라이딩형	2도어 슬라이딩형	
	욕실수납장(욕실2_부부욕실)	2도어 슬라이딩형	2도어 슬라이딩형	
	기타설비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스마트폰거치대 겸 휴지걸이	
조명설비	각실 조명기구	LED 등기구	LED 등기구	
	주방등	LED 등기구	LED 등기구	
	욕실등	LED 등기구	LED 등기구	
	현관센서등	LED 등기구	LED 등기구	
	드레스룸등	LED 등기구	LED 등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생활정보기	설치	설치	
	스위치, 콘센트류	설치	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	거실, 침실 각 1개소	거실, 침실 각 1개소	
정보통신설비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설치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전실)	천장형(전실)	
세대 환기시스템		설치(1종)	설치(1종)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군포대야미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주)까뮤이앤씨 (604-81-16870) 태안종합건설주식회사 (124-81-7632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105-86-72502) (주)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211-86-75027)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301-81-31079) (주)명성하나엔지니어링(625-86-02081)

9. 계약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LH 수원주택전시관	
<p>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p>	<p>내 수원주택전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오시는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 자목마을 입구/호매실쌍용아파트 버스 정류장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버스) 9, 9-1, 11-1, 13, 13-1, 13-4, 13-5, 15-1, 19, 61, 62-1, 99 · (광역·직행) 7800, 8000 ■ 운영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담기간) 2026.07.11.(토) ~ 2026.07.12.(일) (10:00~17:00) (인터넷대행현장접수) 2026.07.13.(월) ~ 2026.07.24.(금) ※ 공휴일 및 주말(토·일요일) 미운영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3페이지)을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기간) 2026.08.14.(금) ~ 2026.08.17.(월)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6.11.16.(월) ~ 2026.11.17.(화) ■ 운영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인터넷대행 현장접수의 경우 10:00 ~ 15:00에만 운영(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p>군포대야미 A-1블록 홈페이지</p>	<p>분양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 : www.lhgd-a1.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수원 주택전시관 : 031-297-5229 (10:00 ~ 17:00)

